

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3. 11. .

법제처 심사 전

방 위 사 업 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지원 및 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해 과장급 직위 직무등급의 일부 조정, 부서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 사무 신설, 방위사업교육원 과장직위 직무등급에 영관급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제협력사업팀장”을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무기체계별 방산수출 지원, 수출을 고려한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제13조의5제1항 중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을 “항공기총괄계약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으로 하고, “해상항공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을 “해상항공기사업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을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으로 하고,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을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로 한다.

제25조의3제1호사목 중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7조의3 제목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소형무장헬기사업팀)”으로 하고,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을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한시정원)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및 해당 국가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별표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제2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향	
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2
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

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교로, <u>국제협력사업팀</u> 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u>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u> ----- ----- ----- ----- -----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생 략)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
1. ~11. (생 략)	1.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무기체계별 방산수출 지원, 수출을 고려한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업무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전투기사업팀·공중기동기사업팀·해상항공기사업팀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을 두되, <u>항공기총괄계약팀장</u>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및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 ----- ----- ----- ----- <u>항</u> <u>공기총괄계약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u> ----- -----,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 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해상 항공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 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 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 교로 보한다.</u>	----- ----- ----- ----- <u>해상항공기사업 팀장</u>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 직)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 기총괄계약팀·지상유도무기사업 팀·방공유도무기사업팀·해상유 도무기사업팀·항공유도무기사업 팀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지상유도무 기사업팀장·방공유도무기사업팀 장·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 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 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 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u></u>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 ----- ----- ----- ----- -----, <u>지상유도 무기사업팀장·항공유도무기사업 팀장</u> ----- ----- -----, <u>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u>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방위산업교육원) ① (생 략) ② 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 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 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 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u>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제22조의2(방위산업교육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u>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 급 장교로</u>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 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 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 의 하부조직 가. ~ 바. (생 략) 사. 헬기사업부: 한국형기동헬기사 업팀, <u>소형무장헬기체계팀</u> , 공격 헬기사업팀 아. (생 략) 2. (생 략) 제6장 <u>한시조직</u> 제27조의3(<u>소형무장헬기체계팀</u>) <u>소 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과학기술</u>	1.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u>소형무장헬기사업팀</u> ,----- ----- 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27조의3(<u>소형무장헬기사업팀</u>) <u>소 형무장헬기사업팀장</u> -----

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신 설>	-----,
	제28조(한시정원)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및 해당
	국가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
	2월 31일까지 별표4에 따른 한시정
	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05</u>	<u>402</u>	-3
.	.	.	.
.	.	.	.
일반직 계	<u>404</u>	<u>401</u>	-3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33</u>	<u>132</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 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	<u>115</u>	<u>114</u>	-1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 ·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 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72</u>	<u>71</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407</u>	<u>404</u>	-3
.	.	.	.
.	.	.	.
일반직 계	<u>406</u>	<u>403</u>	-3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 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 ·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 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36</u>	<u>135</u>	-1
.	<u>114</u>	<u>113</u>	-1
.	<u>72</u>	<u>71</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계	<u>367</u>	<u>365</u>	-2
일반직 계	<u>367</u>	<u>365</u>	-2
·	·	·	·
·	·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u>	<u>8</u>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8</u>	<u>96</u>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27</u>	<u>128</u>	+1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5</u>	<u>54</u>	-1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0</u>	<u>9</u>	-1
·	·	·	·

·	·	·	·
·	·	·	·
·	·	·	·

[별표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9</u>	<u>90</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1</u>	<u>110</u>	-1
.	.	.	.
.	.	.	.
.	.	.	.
.	.	.	.
.	.	.	.
.	.	.	.